

꿈모아상호부금특약 일부개정약관

꿈모아상호부금특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생계형저축, 세금우대종합저축”을 “비과세종합저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특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특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, <u>생계형저축</u> , <u>세금우대종합저축</u> 의 대상예금이 될 수 있다.	제6조(세금우대의 적용) ----- -----비과세종합 저축----- --.